

SJC

2008 12 23

.....3

.....5

1. (5)11

5

2. (8)17

3 , 5

3. (3)22

2 , 1

4. (15)24

3 , 12

5. (3)38

2 , 1

6.41

3

서 문

서울재팬클럽(SJC)은 1998 년부터 10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게 비즈니스 상의 애로사항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건의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SJC 의 건의에 대해 지금까지 진지하게 대응해 주시며 많은 개선조치를 강구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금번 11 회째가 되는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신속한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2008 년 2 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Business Friendly’를 경제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향상을 지향해왔습니다. 그러나 원유를 비롯한 국제적 자원가격 급등,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에 따른 세계적 경기후퇴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앞날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경의 경제환경일수록 오히려 한국 비즈니스 환경의 매력을 제고시키고 외자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도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일관계는 2007 년에 약 300 억 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2008 년에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대일적자 개선을 위해 일본기업에 의한 가일층의 대한투자, 한국산 부품·소재의 조달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에게 한국의 매력은 더 이상 낮은 코스트가 아닙니다. 기술력이 높고 또한 일본어가 능숙한 인재, 정비된 각종 인프라, 한국 첨단기업과의 안정적 거래 등이 일본 기업들이 느끼는 공통적 매력입니다. 향후에도 일본기업들의 대한투자자 이미 진출한 일본기업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SJC 가 건의하는 애로사항의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SJC 는 한일 EPA 의 조기실현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한일 EPA 협상은 2004 년 11 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되고 2008 년 6 월 12 에 실무협의를 열렸지만 협상타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세계의 성장 중심인 동아시아,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자유경제권 구축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한일 EPA 이며 미래적으로는 한중일을 연결하는 EPA/FTA 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한국정부께서 한일 EPA 협상 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회째 건의에서는 노동·노사, 금융, 세무, 지적재산, 개별안건, 생활관련 등 총 37 개 항목을 건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는 10 건, 계속은 27 건입니다. 건의함에 있어 SJC 전문위원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일본 상황 등을 고려한 후에 한국의 현황을 충분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추출하여 건의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나름대로 한국의 법률·제도의 개정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건의 사항이 이미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노사 분야의 5 항목은 모두 계속입니다. SJC 회원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계 기업의 관심이 지극히 높은 반면, 한국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해결이 어려운, 이른바 ‘하드 코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문제의 진전 없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금융 분야, 세무 분야는 각각 전문적 사항이 많은데 모두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 분야는 가장 많은 15 항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바입니다만 지적재산 보호를 통한 기업활동의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정·확충을 부탁드립니다.

개별안건에는 신약승인·약가수재의 스피드업, 국가산업단지 내 폐열을 이용한 농업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기업에도 파급되는 공통적 사항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생활관련 분야에서는 출입국심사, 외국인등록증, 교통매너 등 세부에 걸친 항목이 많은데 주재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포함한 생활 전체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져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한국’ 실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8 년 12 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무라가미 마사아키(村上 雅章)

건의사항 (요약)

각 항목의 우측은 전년도 회답

노동·노사관계 분야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철폐 【계속 / 내용변경】 수용 곤란

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동의가 전제된다면 노사교섭에서 기업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동의 의무를 철폐함과 함께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가능한, 노사 모두에게 공평한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2) 유급휴가 보상 금지 【계속 / 내용 변경】 수용곤란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미사용 유급휴가 보상 의무의 소멸이 규정되었고 또한 동 법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어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등에 응하지 않는 한 정산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가 남는다. 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유급휴가 보상을 법률로 금지할 것을 요망한다.

3)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계속 / 내용 추가】 수용곤란

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법정퇴직금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각 기업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자사의 고용·경영상황에 입각한 퇴직금제도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없다.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를 요망함과 함께 퇴직사유에 따라 퇴직금에 격차를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초액을 통산고용기간에 걸친 평균임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평균임금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4)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및 차별금지의 완화 【계속 / 내용 추가】 장기검토

한국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 및 처우격차 금지등 2 가지 면에서 엄격하게 제한받는다. 구체적으로 ①사용기간 제한의 연장(2년→4년) 및 노사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추가적 계약연장이 인정되는 제도를 요망, ②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5)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지원(노조 전임자의 급여지원 포함) 금지 【계속 / 내용 변경】 장기검토

본 건에 대해 다른 선진국의 노동법은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규정을 2009년 말까지 실시 유예하는 것은 기정 방침이라 하므로 이 점은 불가피하다고 양해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본래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합리적 운용에 관한 검토를 하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노사정으로 구성)에서 이루어진 현재까지의 논의 경과 및 구체적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금융 분야

6) 외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개정 【신규】

외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외국환은행은 ①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②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외화대여를 제공할 수 없다. ②의 철폐 혹은 수출(매개)거래와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절히 개정해줄 것을 요망한다.

7)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의 지급이자 손금처리 【신규】

지불보증만을 취득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실제 자금의 흐름은 국내에서 완결되기 때문에 기타 국내자본의 동 업종 타사가 행하는 국내조달과 완전하게 동일하므로 형평성이 결여된다. 이 때문에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이 있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의 출자지분의 6 배를 초과하여도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망한다.

8)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제 완화 【신규】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위탁으로 간주되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또한 규정상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용함에 있어 본점 소재국의 금융감독기관(일본의 경우 금융청)으로부터의 NO OBJECTION LETTER 의 취득·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의 취득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지점과 본점이 연서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완화해주시기 바란다.

9) 해외송금의 규제 완화 【계속 / 내용변경】 장기 검토

출장시의 대체정산이나 해외 모회사가 대체지불하고 있는 일본인 파견자의 해외임금 정산에 대해 해외송금이 인정되지 않는 등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송금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송금시 제출하는 자료가 매우 많다.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해외송금은 필수불가결하며 기업의 편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외송금의 신속한 규제완화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10) 유가증권보유제도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탄력적 운용 【계속】 장기 검토

장기보유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그 보유액이 일률적으로 자기자본의 60%를 상한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에 소재하는 지점 단위의 자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에 비해 투자가능금액이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어 있다. 투자자로서의 신용능력은 금융기관 전체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의 지점 단위 자기자본이 아닌, 금융기관 전체의 자기자본을 적용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란다.

11)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의 개방 【계속】 일부 수용

외환자유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자유도가 한층 확산되고 있으나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 접근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대한투자확대를 위해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의 조기개방을 계속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12) 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대한 대출규제 개선 【계속】 장기 검토

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간주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현재의 산정방법으로는 본지점 대여금의 증가액이 간주자기자본액에서 공제되는 등의 제약이 있다. 신용공여한도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반입자본금이 아닌 본점 자기자본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란다.

13)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철폐 【계속】 장기 검토

한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용자대상의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의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wholesale(도매)에 특화된 은행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자계 중소기업의 체력저하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철폐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세무·회계 분야

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신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 근로소득의 30%를 일괄적으로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부터, 한국은 외국인 입장에서 생활비 등이 많이 드는 국가이며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 등에 의해 생활비 등이 급등하고 있다. 가일층의 외자도입이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도 비과세비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할 것과 기한을 철폐해줄 것을 요망한다.

15) ‘중소기업’ 정의변경에 따른 세제 측면을 중심으로 한 영향에 대한 우려 【신규】

‘중소기업’ 정의변경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의 자리매김 변경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우대시책의 실효가 우려되므로, 우대시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란다.

16) 국세청 과 관세청의 과세평가 방법의 차이 【계속】 장기 검토

해외에서 한국 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청간에 과세평가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국세청과 관세청간에 이전가액 평가의 일관성을 조속히 도모하고 법제도의 정비 등을 시급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지적재산권 분야

17) 국민의 지적재산 의식 가일층 향상 【계속】 대응 완료

한국 사회 전체에서 불법복제나 위조상품을 용인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지적재산 의식 향상을 위해 ① 모조품 등 판매자를 철저히 적발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정보 발신, ② 모조품에 의한 위험성이나 건강 상의 피해 등을 TV 등 주요 미디어를 통해 계몽, ③ 초, 중학생들에게 제공 가능한 부교재 제작 등을 요망한다.

18) 모조품·해적판 방지 대책을 위한 기업활동에 대해 행정지원 등 대응 정비 【신규】

모조품·해적판이 범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측은 그 대응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인적 부담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① 모조품의 제조원, 유통경로, 판매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② 고발 창구를 특허청으로 일원화, ③ 특허청의 위조상품 고발 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요망한다.

19) 영업비밀 보호, 정보누설 방지에 관한 사업자의 계몽 【신규】

영업 비밀 보호나 정보 누설 방지에 관한 의식 및 우선순위가 낮아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일본계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①영업비밀의 보호·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공표, ②기업의 영업 비밀의 보호 방안에 대하여 한국 기업이 대응했던 예를 조사하여 국내외 기업에게 정보 제공 ③행정 부문의 기업 정보 등에 대한 철저한 정보 관리 및 그 대응 방법에 대한 홍보를 바란다.

20) 세관에서의 적발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적발능력 강화 【계속】 장기검토

한국에서는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관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①통관금지조치가 적용되는 범위를 디자인권, 특허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까지 조기에 확대 ②2차제품을 단속하는 세관 진용의 강화. ③세관 담당관에 대한 교육 측면에서의 강화, ④ 검사율을 높이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품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망한다.

21)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 통지의 답변 기한 연장 【계속】 장기검토

특허청으로부터의 특허심사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 기한이 2 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며 연장하려면 연장비용이 든다. 또, 한국어 문헌이 인용예인 경우 등에 있어서 인용예의 번역이 필요한 외국 기업에게는 지정 기간 내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정 기간을 3~4 개월로 해 줄 것을 요망한다.

22) 멀티의 멀티클레임 용인 【계속】 장기검토

예를 들면 특허출원의 경우, 관련(의거)하는 다른 발명을 다중(2 회 이상)으로 인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특허 출원자는 관련(의거)하는 다른 모든 발명(= 다른 종속항 등)에 대하여 처음부터 기술해야 하므로 대단한 번거로움과 비용이 수반된다. (심사관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불허되는) 발명의 다면적인 보호 관점에서도 이와 같은 종속 형식을 인정할 것을 요망한다.

23) 특허 분할 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계속】 일부조치완료

뛰어난 발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출원인 스스로가 특허 청구 범위에 명확한 전망을 세우기는 어렵고, 따라서 발명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 특허를 취득하지 못한채 거절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한 구제 조치로써 또한 다면적·망라적 권리 취득이 가능하도록 특허 결정 후나 거절 결정 후의 일정 기간 동안에도 분할 출원(선 출원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없었던 부분을 추가 출원)을 가능하게 해주기 바란다.

24)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신규】

기록 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명의 모방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그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주기 바란다.

25) 외국어 출원에 대하여 【계속】 장기검토

영어에 의한 출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해도 번역의 실수가 발생하며 권리 취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영어에 의한 외국어 출원의 도입을 요망한다.

26)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보정 범위 확대 【계속】 장기검토

현행은 한국어로밖에 출원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출원 내용을 보정할 경우, 외국어 원문을 참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번역의 벽에 의해 원문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외국어 원문에 기초한 절차 보정을 가능하게 해 주기 바란다.

27) 상표 출원의 조기 심사 제도 도입 【계속】 수용근란

상표 출원에 관하여 긴급한 관리화를 요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통상 출원 심사에 대한 조치로써 일정한 조건 하에 우선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란다.

28) 상표 출원의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 【계속】 수용근란

예를 들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등록이 끝난 상표 A의 존재를 모른 채 동일 상표 B를 제 3자가 등록 출원한 경우 우선 A의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심사하여 A 상표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A 상표 취소에 따라 출원중인 B 상표도 마찬가지로의 취소 사유가 적용되어 무효가 된다. 따라서 B 상표의 등록에는 A 상표가 취소된 후 다시 한번 등록 출원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두 번 등록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후출원(상표 B)의 등록 승인을 현행의 출원 시에서 심사 시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29) 무효심판의 청구인의 적격 제한 철폐 【계속】 장기검토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에게만 청구인적격이 있으며, 누구라도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이전에만 가능하나, 누구라도 기간의 제약 없이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30)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계속】 수용근란

특허권의 유효·무효의 판단은 특허심판원에서, 침해 소송은 지방재판소에서 하는 등, 일괄적으로 심사해야 할 사항을 둘로 나누어 이중 실시하므로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원고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하나의 침해 사건에서 침해 소송과 무효 심판 양쪽을 한번에 한 곳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31) 침해 입증의 용이화 【계속】 장기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소송 제기 전에는 증거 수집의 처분 절차가 없으나, 소송 상대가 될 예정인 자로부터의 정보나 증거 입수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① 기소전의 증거 수집 방법, ② 소송 심리중의 증거 수집에 대하여 개선을 요망한다.

개별요망사항

32) 신약승인·약가 수재 심사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신규】

약사와 약가와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신약을 환자에게 빨리 전달하도록 약가 수재 심사기간의 대폭적 단축과 적절한 약가 산정 체제 구축을 요망한다.

33) 국가 산업단지 내에서의 신규사업 (폐기열을 이용한 농업사업)의 추가 【신규】

국가 산업단지 내에서의 사업 리스트에 농업사업(농수산물 제조판매 및 그에 관한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 리스트에 상기 사업 추가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 동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국가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본래의 사업으로 발생된 폐기열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4)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샘플의 수입절차 확인방법의 개선 【계속/내용변경】
수용곤란

현행 법률의 준수, 신청 작업의 신속화, 내용의 재확인을 위하여 수입자에게 자사 수입분에 관한 관세청, 화학물질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 등의 공개를 요망한다.

생활환경개선분야

35) 생활환경 개선 (교통문제 제외) 【계속】 수용가능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자들의 편리성, 공공미화, 출입국심사 등에 관하여 계속해서 배려해 주기 바란다.

36) 교통문제 전반에 관한 개선 【계속】 수용가능

공공교통기관 등에서의 매너, 교통 법규 준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배려해 주기 바란다.

37)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계속】 수용가능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한 안건>

출산한 자녀의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출산 후 1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써 여권 및 호적 초본이 있다. 일본에서는 호적 기재까지 보통 1.5 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신생아의 외국인 등록 신청 기간을 90 일정도로 연장해 줄 것을 요망한다.

건의사항 ()

각 항목의 우측은 전년도 회답

1. 노동·노사관계 분야

건의명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철폐 【계속 / 내용 변경】 수용 곤란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기업경영 환경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개정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우에도 노동조건의 하향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리하게 변경할 시 노동조합의 동의의무는 단기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의 신규고용을 주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고용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므로 근로자 전체의 이익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p>
개선요망	<p>2007년에 저희가 제시한 건의에 대해 ‘한국의 일부 판례(대법원 1978. 9. 12 선고)에서 유연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고 하였으나, ‘불리한 변경의 합리성’ 을 판단한 판례도 있고 또한 ‘동의’ 가 전제되어서는 노사간 교섭에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하 2 항목의 개선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① <u>근로기준법 상의 동의 의무를 폐지해주시기 바란다.</u> <u>그 후,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 에 대해 충분한 논의·검증이 가능하고 노사 모두에게 공평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u></p>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노동부 <관련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p>
비고	<p>일본에서도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노사간에서 교섭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반드시 ‘동의’ 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노동기준법 제 90 조). 노사간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시스템이다. 사법기관에서 ‘고도의 경영상의 필요성·합리성’ 이 인정될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인정된 최고재판례(대법원 판례에 해당)도 있다.</p> <p>일본 판례에서 ‘합리성’ 이란 주로 이하의 요소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종업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② 기업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정도 ③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 자체의 타당성 ④ 보상조치 및 기타 관련된 다른 노동조건의 개선 ⑤ 다수 노동조합 또는 다수 종업원과의 교섭 경위 ⑥ 다른 노동조합 또는 다른 종업원의 대응 ⑦ 불리한 변경 내용에 관한 동업종 타사의 상황 ⑧ 근로자의 불이익 감소 노력

건 명	2. 유급휴가 보상 금지 【계속 / 내용 변경】 <u>수용 곤란</u>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률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의 상한 설정, 월차 유급휴가의 폐지, 사용을 장려하였으나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 유급휴가의 보상 의무 소멸이 정해졌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어 정부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기간 종료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잔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된다.</p> <p>이는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목적으로 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로는 동 근로기준법 내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개정 취지에 따라 회사가 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하고자 하여도 유급휴가 보상을 수입의 일부로 생각하는 근로자의 반발이 강해 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법개정 후에도 정부가 지향하는 유급휴가 사용률 향상과 관련하여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p> <p>서울재팬클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유급휴가 보상 금지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일본계 기업은 73%이며 일본계 기업에서도 법개정이 의도 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p> <p>아울러 2007년에 저희가 제시한 건의에 대해 답변해 주신 ‘공기업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44개 기업 중 60% 이상이 휴가이용 촉진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기업이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할수있다.</p>
개선 요망	<p>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u>연차 유급휴가 보상을 법률로 금지할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u> 본 건에 대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지라도 <u>조속히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가 각 기업의 취업규칙 및 노사협정에 우선되도록 법제도 정비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노동부 <관련법령 등> 근로기준법 61조, 근로기준법 94조 제1항</p>
비 고	<p>일본에서는 휴가의 사용을 중시하고 있으며 법률로 ‘사용자는, . .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기준법 제3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권 해석(1955년 11월 30일 기수[基收: 지방노동국장의 법령해석 관련 문의에 대한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의 회답] 4718호)에서도 ‘법정일수내의 유급휴가 보상’은 위법으로 보고 있다.</p> <p>일본계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 면담을 희망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p>

건 명	3.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계속 / 내용 추가】 <u>수용 곤란</u>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법정퇴직금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자사의 고용방침, 경영상황 등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없으며, 퇴직금제도와도 관련된 고령자 고용을 위한 각종조치(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획일적 법정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투자대상국으로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p> <p>서울재팬클럽의 설문조사에서도 84%의 기업들이 ‘법정퇴직금제도가 자사의 사업과 관련 있다’ 고 응답하고 있으며 법정퇴직금제도 처리의 향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p> <p>따라서 법정퇴직금제도를 발본적으로 개정(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 자유화)하거나, 현행 제도는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조속하게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p> <p>①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사유의 제한이 없으므로 징계해고자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퇴직자와 동등한 법정퇴직금이 보장되어 있음(과도한 근로자 보호)</p> <p>② 퇴직금이 갖는 법적 성격이 임금의 후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기초액으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액을 채택하고 있음</p> <p>특히 ②에 대해서는 직전 3 개월이라는 지극히 단기간의 급여수준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서 기술한 고령자 고용을 위한 각종조치(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를 도입할 때 저해요인이 되는 등 제도적 결함이라 할 수 있다.</p> <p>또한 2007 년에 저희가 제시한 건의에 대해 ‘2005 년 12 월 이후 종전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의 선택도 가능하다’ 는 답변이 있었으나, 퇴직연금 도입상황(2008 년 7 월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불과 11.2%여서 종전(비퇴직연금형)의 퇴직금제도 개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p>
개선 요망	<p>퇴직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u>노사간 대화를 통해 각 기업의 고용방침, 경영상황에 따라 적절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 자유화)해주기 바란다.</u></p> <p>또한 현행 제도의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u>①퇴직사유에 따라 퇴직금에 차등을 둘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②법정퇴직금의 산정기초액을 통산고용기간을 통한 평균임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평균임금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주기 바란다.</u></p> <p>(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액과는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6항에서 더욱 적절한 정의를 내리는 등의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노동부</p> <p><관련법령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설계가 각 기업에 일임되어 있어 고령자 고용을 위한 각종 조치와 더불어 유연한 검토가 가능하며, 실제로 한국보다 고령자 고용이 진전되어 있다.</p>

건 명	4.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및 차별금지의 완화 【계속 / 내용 추가】 장기 검토
현황/문제점	<p>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계 기업 가운데 종업원수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전체의 80%에 달하여 향후 일본계 기업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p> <p>서울재팬클럽의 설문조사에서도 60%의 기업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 완화가 자사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처리의 향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p> <p>한국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 및 ‘처우격차 금지’ 2가지 면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일본계 기업에서는 2009년 7월 이후 비정규직 활용이 대폭 제한되면 인건비 증가 및 인재활용의 신속성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p> <p>향후 투자촉진을 통해 고용규모의 확대를 실현하고 특히 신규 고용 창출에 효과적인 그린필드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용환경 측면에서도 타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며, 특히 일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용의 유연성을 촉진하는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p> <p>또한 2007년에 저희가 제시한 건의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2년)은 장기간에 걸쳐 노사정 및 국회의 논의를 거친 결정이므로 법시행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 재차 법률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은 이해하나, 대한투자실적이 큰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고용환경을 확립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투자(특히 그린필드형 투자)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인 하나라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p>
개선 요망	<p>구체적으로 <u>이하 2개 항목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u> 한다. 두 가지 모두 즉각적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도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적어도 어느 한쪽의 실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p> <p>① 사용기간 제한의 연장(최장 2년→4년) 및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추가적 계약연장이 인정되도록 제도의 재검토를 바란다.</p> <p>②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노동부</p> <p><관련법령 등> 비정규직보호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근로자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특히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노동자파견법 제40조 제2항).</p>

<p>건 명</p>	<p>5.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지원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포함) 금지 【계속 / 내용 변경】 장기 검토</p>
<p>현황/문제점</p>	<p>본건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들의 노동법에서는 ‘부당 노동행위’ 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용자측에 대해 벌칙규정이 있는 것이 상식이다. 이것은 사용자측이 기존의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항하여 회사측의 지원을 받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을 배제한다. ② 복수의 조합이 존재할 경우, 보다 회사측에 유리한 노동조합에게만 재정지원을 하여 그 세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p>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p> <p>한국도 법 체계상으로는 이러한 규정이 있으나 실상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회사측의 재정지원을 받는 ‘노동조합’ (다른 선진국 경영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단체는 ‘노동조합’ 이 아니다)이 각종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 으로서 각종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보호 정책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p> <p>이러한 규정위반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에 제소하지 않으면 그 사실의 인정, 법원제소, 처벌적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법규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민주화의 상징’ 이며 경영자측의 재정지원 없이는 조합설립이 어려워 그 관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노동조합’ 이 불리하지 않은 이상 ‘중앙노동위원회’ 에 제소하는 일도 없기때문에 ‘부당 노동행위’ 가 거의 법률적용을 받지 않는 관습으로 이어져 온 것 같다.</p> <p>그러나 재정적으로 자립된 ‘노동조합’ 육성은 ‘노동조합’ 본래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투명하며 가입근로자와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조합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다른 선진국 수준의 ‘노사관계’ 는 구축할 수 없다고 본다.</p> <p>건전한 노사관계 없이는, 다시 말해 법률과는 별개로 ‘관습’ 에 의해 위법적 사태가 허용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p>

<p>개선 요망</p>	<p>2007 년 저희가 제시한 건의에 대해 특히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규정’ 을 2009 년 말까지 실시 유예하는 것은 기정 방침이라고 하셨기에 이 점은 부득이하다고 이해되나 <u>이하 2가지 점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란다.</u></p> <p>① <u>2010 년 이후 본래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합리적 운용에 관한 검토를 하는 ‘노사 관계발전위원회’ (노사정으로 구성)가 설치되었는데, 현재까지의 경과 및 구체적 논의 내용</u></p> <p>② <u>2010 년부터 운용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운용함에 있어 이하 1)~4)에 대해 현시점의 노동부의 구체적 견해를 듣고자 한다.</u></p> <p>1) 기술한 바와 같이 ‘부당 노동행위’ 는 근로자측의 제소가 없으면 적발되지 않는데 이외의 적발수단을 법률상 담보할 예정은 있는가, 혹은 한국 노동조합법 제 2 조 4 항 b 에 있는 ‘경영자측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자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엄격히 운용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 (예: 지원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노동조합’ 의 자격재심사 등)</p> <p>2) 2010 년부터 곧바로 운용을 개시할 것인가. 아니면 소정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할 것인가.</p> <p>3) 노동쟁의 발생 시 현정권에서는 ‘NO WORK NO PAY’ 원칙을 관철하여 어떠한 명분이라도 분쟁기간 중의 급여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이지만 금번 재검토에서도 같은 방침으로 임할 것인가. 예를 들면, 노동조합비 인상분을 평균임금 인상분에 추가하여 회사측이 지급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침으로 대처할 것인가</p> <p>4)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명목상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실제로 조합업무만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노동부 <관련법령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 항</p>
<p>비 고</p>	<p>일본에서도 법률로 ‘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경리상 지원을 받는 자’ 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 각 기업은 법률에 의거하여 운용하고 있다.</p>

2. 금융 분야

건 명	6. 외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개정 【신규】
현황/문제점	<p>외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 (외화대출의 용도제한)</p> <p>‘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제국장이 정하는 국내시설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2. 기타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개선 요망	<p>상기 2 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항목의 철폐, 혹은 개정</p> <p>개정될 경우: 수출(매개)거래 외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절하게 개정</p>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은행</p> <p><관련법령 등> 외환거래업무 취급세칙</p>
비 고	<p>2008년 1월 4일</p> <p>한국은행/국제기획팀/담당과장 및 조사역에게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하여 표제의 건에 관한 건의서를 이미 제출하였음</p>

건 명	7.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의 지급이자 손금처리 【신규】
현황/문제점	<p><현황></p> <p>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동 주주의 지불보증에 의해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6 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등으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p> <p><문제점></p> <p>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이라면 지급이자 및 할인료 지불이 국외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p> <p>그러나 단지 지불보증만을 취득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라면 실제 자금의 흐름은 국내에서 완결되기 때문에, 기타 국내자본의 동업종 타사가 행하는 국내조달과 동일한 것으로써 이는 현저하게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p>

개선 요망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이 있더라도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의 출자지분의 6 배를 초과하여도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기획재정부(조세실 국제조세제도과 및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관련법령 등>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 장 제 14 조
비 고	<일본의 경우에 대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이 의해 일본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39 조 13)

건 명	8.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제 완화 【신규】
현황/문제점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2005 년 7 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된 이후 업무위탁에 관한 사전·사후보고의 절차가 명확화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개선되었다. 관련규정상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위탁으로 간주되어 해당규정상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 상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해당 본점소재국의 금융감독기관(일본의 경우 금융청)으로부터 ‘한국 금융당국이 해당 본점에 대해 감독·검사(주1)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이른 바 NO OBJECTION LETTER 의 취득 및 당국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주 1) 수탁회사의 고객정보 보호의무 준수상황 등의 점검
개선 요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은행 당사자 입장에서 이러한 문서를 상대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u>고객정보 보호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위탁자(당점)와 수탁자(본점)가 연서한 서약서(주 2)를 당지의 당국에 제출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완화해주시기 바란다.</u> (주 2) 예시: 고객정보의 보호의무 위반(목적 외 정보누설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약하는 등을 취지로 하는 문서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금융감독원 <관련법령 등>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비 고	

건 명	9. 해외송금의 규제 완화 【계속 / 내용 변경】 장기 검토
현황/문제점	한국에서는 해외자금 송금 시의 규제가 매우 엄격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장 시의 대체 정산’, ‘해외 모회사가 대체지불하고 있는 일본인 파견자의 해외임금 정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외송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송금을 인정할 경우에도 송금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은 등 규제가 까다로워 주한 일본계 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선 요망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해외송금은 필수적인 것이며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해외송금의 조속한 규제완화를 부디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지난 번(2007년) 답변에서는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서류제출을 규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송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점을 부기하고자 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등> 외환거래법
비 고	

건 명	10. 유가증권보유제도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탄력적 운용 【계속】 장기 검토
현황/문제점	한국에서는 은행법 제38조 및 은행법 시행령 제21조 2에 의해 주식 및 장기보유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그 보유한도액이 일률적으로 자기자본의 60%를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동 한도금액 산정근거로써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본점의 자기자본이 아닌, 한국에 소재하는 지점 단위의 자본금이 적용되고 있어 한국 금융기관에 비교해서 투자가능금액이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제된 상황이다.
개선 요망	본래 투자자로서의 신용능력은 금융기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당한 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에 소재하는 지점 단위의 자기자본이 아닌 금융기관 전체의 자기자본을 적용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번(2007년)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장기 검토’ 였으나, 현재 한국측의 검토상황에 대해 확인해주셨으면 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등> 은행법 제38조, 은행법 시행령 제21조 2
비 고	

건 명	11.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 시장의 개방 【계속】 일부 수용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2002 년 이후 외환자유화를 지향하며 각종 규제의 단계별 완화를 통해 거주자에 대한 자유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p> <p>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 시장으로의 접근은 지극히 한정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비거주자의 한국원화 선물환헤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NDF(Non Deliverable Forward)만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p>
개선 요망	<p>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 시장의 조기개방을 계속 요청하고자 한다.</p> <p>지난 번(2007 년)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에서는, 한국원화 수출입 허가제 폐지, 비거주자의 유사 한국원화계정 통합,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신고면제한도액을 100 억 원에서 300 억 원으로 확대, 해외거래소에서의 한국 원화결제 허용 등을 이미 수용했다는 답변이었으나, 그 후 <u>한국측의 검토상황에 대해 확인해 주기 바란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p> <p><관련법령 등> 외환거래규정</p>
비 고	

건 명	12. 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대한 대출규제 개선 【계속】 강기 검토
현황/문제점	<p>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대한 신용공여제도는, 간주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다. 2001 년 7 월의 제도변경 결과, 본·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주자기자본에 산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한도확대가 가능해진 것은 평가할 만 하다.</p>
개선 요망	<p>그러나 현재의 산정방식으로는 본·지점 대여금의 증가액이 간주자기자본액에서 공제되는 등의 제약이 있어 충분한 조치라고는 할 수 없다. 신용공여한도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반입자본금이 아닌 본점의 자기자본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또한 지난 번(2007년) 건의사항의 답변에서는 ‘장기 검토’ 였으나 현재 <u>한국측의 검토 상황에 대해 확인해 주기 바란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p> <p><관련법령 등> 은행법 제 35 조, 은행법 시행령 제 26 조, 은행업감독규정 제 10 조</p>
비 고	

건 명	13.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철폐 【계속】 장기 검토
현황/문제점	<p>한국의 은행은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1986 년 7 월말 잔고를 기준으로 이후의 원화대출 증가분의 2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p> <p>그러나 금융기관이 하는 용자는 용자대상의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p> <p>한국의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은 본래 정부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용자나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정부의 재보증 등에 의해 대응해야 할 과제로서, 금융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여 의무화하는 현행 제도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p> <p>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는 세밀한 여신관리가 필요한데 점포수나 인원에 있어 여신관리에 한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p> <p>국내은행과 외국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결과 외국 금융기관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부담이 되는 특례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p> <p>아울러 금번 중소기업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의 정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술한 이유와 같이 wholesale에 특화된 은행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중인 외자계 중소기업의 체력저하까지도 야기할 만한 심각한 문제이다.</p>
개선 요망	<p>계속하여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철폐를 요청하며, 지난 번(2007 년) 건의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 라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u>한국측의 검토상황에 대해 확인해 주기 바란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은행</p> <p><관련법령 등>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 제8호</p>
비 고	

3. 세무·회계 분야

건 명	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신규】
현황/문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은 외국인 근로소득의 30% 일괄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비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부다.
개선 요망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은 외국인근로자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주거비, 생활비 등이 높은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며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 등에 의해 생활비 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가일층의 외자도입 정책과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이상, 기존의 <u>비과세 비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는 것과 제 2 항의 기한철폐를 요망한다.</u>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비 고	

건 명	15. ‘중소기업’ 정의변경에 따른 세제 측면을 중심으로 한 영향에 대한 우려 【신규】
현황 / 문제점	중소기업의 정의변경(중소기업이란 상근자 1,000명 이상 또는 직전 사업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써 또한 모회사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으로부터 진출한 기업의 종업원 규모는 작지만 일본의 모회사가 100% 출자한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정의변경이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될 경우 지금까지 누렸던 우대시책이 실효될 우려가 있다. 정의변경이 부품소재분야 등이어서 일본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했으면 한다.
개선 요망	가령 중소기업의 정의변경이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될 경우에도 우대시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란다.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관련법령 등>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비 고	<p>참고로,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하와 같이 종업원수, 자본금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모회사와의 관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p> <p>제조업·기타 업종: 300명 이하 또는 3억엔 이하</p> <p>도매업: 100명 이하 또는 1억엔 이하</p> <p>소매업: 50명 이하 또는 5,000만엔 이하</p> <p>서비스업: 100명 이하 또는 5,000만엔 이하</p>
-----	--

건 명	16. 국세청 과 관세청의 관세평가 방법의 차이 【계속】 장기 검토
현황/문제점	<p>해외에서 한국 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청간에 과세평가 방법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세청은 비용을 축소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정상가액을 낮게 설정하는 한편, 관세청은 과세가액을 올리기 위해 정상가액을 높이 설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p> <p>각 과세당국(국세청/관세청)은 각각 추정과세액의 목표달성을 위해 서로 인정한 정상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초점이 되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수입품에 관한 이전가액인데 정상가액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다.</p>
개선 요망	<p>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u>국세청과 관세청간에 이전가액 평가의 일관성을 조속히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시급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u></p> <p>또한 지난 번(2007년) 답변에서는 ‘장기 검토’ 라고 하였는데 <u>그 후의 구체적인 검토 상황에 대해 함께 알려주시기 바란다.</u></p>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국세청, 관세청</p> <p><관련법령 등></p>
비 고	

4. 지적재산권 분야

건 명	<p>17. 국민의 지적재산 의식 가일층 향상</p> <p>【계속(1999, 2000, 2004, 2005 년도 건의사항)】 <u>대응 완료</u></p>
현황/문제점	<p>납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곳곳에서 거리낌없이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저렴하다면 불법 상품이라도 이용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불법복제나 모조품을 묵인하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사업수행에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p> <p>모조품에 대해 위법이라는 의식이 낮고 또한 제조 성분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 모조품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등 모조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 여겨진다.</p> <p>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대형전광판을 통한 홍보와 활동성과를 해외기관등에 홍보를 실시해왔다. 한국이 국민들이 보유한 기술혁신 능력을 살려 ‘세계최고 수준의 지적재산 강국 실현’ 목표를 달성하고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국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향상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p>
개선 요망	<p><u>모조품 등의 판매자를 철저히 적발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알릴</u></p> <p>원제조업자의 적발도 중요하고 범죄행위인 국민에게 직접 모조품을 판매하는 ‘판매상’ 과 모조품을 적발하여 없애는 것,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 퇴치에 나서는 정부의 선진적인 자세를 (관련기관과 해외기관이 아닌) TV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한국 국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p> <p>② <u>모조품에 의한 위협이나 건강피해 등을 TV 등 주요 미디어를 통해서 계몽</u></p> <p>위협이나 건강피해에 대한 지식과 정보,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등 올바른 지식을 국민에게 적절하게 알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p> <p>③ <u>초·중학생들에게 부교재를 제작하여 제공</u></p> <p>위법이라는 의식은 기초교육 단계부터 함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p>
비 고	<p>①/②에 대하여</p> <p>일본에서는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나 모조품의 피해를 주지시키기 위해 TV 광고, 포스터, 신문, 잡지, 배너광고 등을 활용하여 ‘모조품·해적판 퇴치 캠페인’ 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p> <p>③에 대하여</p> <p>일본에서는 지적재산을 존중하는 의식을 학교교육 단계부터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단계에 맞추어 지적재산 교육용 부교재를 제작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p>

건 명	18. 모조품·해적판 방지 대책을 위한 기업활동에 대해 행정지원 등 대응 정비 【신규】
현황/문제점	<p>모조품·해적판이 범람하고 있다. 기업측에서는 특히 악질 업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지만 두더지잡기 게임 같은 상태로 끝이 없다. 법적 조치 등의 대책을 취하려면 사전조사 등에 막대한 비용과 인적 부담이 필요하여 다수의 위법행위자를 상대로 대책을 강구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p> <p>한국정부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정보센터 설치나 위조상품 고발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은 한국내에서 모조품·해적판 방지 대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p>
개선 요망	<p>① <u>모조품·해적판의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모조품·해적판의 제조원과 유통경로를 특정하고, 시장의 판매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기업 및 경찰, 세관, 무역위원회 등에 제공한다. 또한 행정 당국이 관련업계 전체에 모조품 피해 및 단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반행위자에게 경고를 한다.</u></p> <p>② <u>고발창구를 특허청으로 일원화하여 특허청이 경찰, 세관, 무역위원회 등에 단속을 요청함으로써 종합적 단속으로 연결시킴과 동시에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단속 성과를 정리한다.</u></p> <p>③ <u>특허청 위조상품 고발센터의 기능 강화 및 창구 확대를 도모한다.</u></p> <p>피해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1) 제조원이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 2) 방대한 수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대응, 3) 경찰의 임하는 자세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며 이러한 기업측 부담을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서포트해 주기 바란다.</p> <p>제조원 등의 조사에 대해서는 기업이 조사회사에 위탁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2)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자체에 홍보수단 등을 통해 업계 단체나 각 기업에 대해 개별적 모조사건이나 단속에 관한 홍보 및 경고를 실시함으로써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인맥’이 없으면 단속의뢰도 받아 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위조상품 고발센터가 창구역할을 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p>
비 고	

건 명	19. 영업비밀 보호, 정보누설 방지에 관한 사업자의 계몽 【신규】
현황/문제점	<p>영업비밀 보호나 정보누설 방지에 관한 의식이나, 우선순위가 낮다고 느껴진다.</p> <p>한국에서는 2004년의 법개정에 따라 침해자 요건의 철폐, 벌금상한액 변경, 보호범위의 확대, 친고죄 조항의 폐지 등을 달성하였다. 또한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영업비밀은 스스로 지키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영업비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기업과 거래할 때 일본계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p>
개선 요망	<p><u>① 영업비밀의 보호·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검거사례·재판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널리 국민에게 공표한다.</u></p> <p>개정법 하에서 법의 취지가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대응의 실효성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한다.</p> <p>계약으로 정한 비밀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영업비밀에 대한 평가·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낮다고 생각되며 영업비밀의 침해 상황, 그 피해와 사회에 대한 영향에 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널리 국민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영업비밀에 관한 계몽을 도모한다.</p> <p><u>②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기업·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u></p> <p>영업비밀 보호는 고용 등에도 깊이 연관되므로 한국의 상관습이나 문화 등을 감안한 방안을 기업측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실태에 입각한 한국 기업의 선진적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국내기업·해외기업에 소개하고 장려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공통적 인식을 갖고 개선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p> <p><u>③ 행정부문에 있어서도 기밀정보, 기업정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대응방법을 홍보하는 등 국민에게 모범을 보인다.</u></p> <p>영업비밀에 대한 의식이 낮은 점은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며 기업의 비밀정보가 누설되어 손해·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많은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다. 솔선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p>
비 고	

건 명	20. 세관에서의 적발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적발능력 강화 【계속 (2005, 2006 년도 건의사항)】 <u>장기 검토</u>
현상 / 문제점	<p>일본, 미국 등의 관세법은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통관 금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근거를 이유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상품 디자인이 상품 가치의 핵심인 상품에서는 상표만을 제품에서 제거한 모조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p> <p>상표권 침해 물품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2 차 상품' (예를 들면 등록 상표가 있는 단추(1 차 제품)를 부착한 의복(2 차 제품)등)의 수입 금지에 대한 법개정이 3 월에 있었으나 단속에 필요한 세관의 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p> <p>통관 시에 기업 비밀 공개를 요구 받아 수입을 단념한 경우도 있다.</p>
개선요망	<p>① <u>통관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범위를 디자인권, 특허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으로까지 조기에 확대</u></p> <p>특히 디자인권은 외관이며, 상품 전체의 디자인이라면 상품의 일부인 상표보다 오히려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국 기업의 경제 활동의 글로벌화나 제품 품질 및 기술·디자인 등의 경쟁력 제고를 비추어 본다면 특허권 등의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관 금지 조치가 가능한 제도의 조기 실현은 중요한 과제이다.</p> <p>② <u>2 차 제품을 단속하는 관세 진용의 강화. 국내외 제조업자·유통판매업자·소비자에 대하여 2 차제품의 수입통관금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u></p> <p>2 차 제품의 수입통관금지 실적을 쌓아 일본, 미국에 이어 2 차 제품의 수입통관금지가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한다.</p> <p>③ <u>세관 담당관에 대한 교육 강화, 의식 개혁</u></p> <p>④ <u>검사율을 높이는 등 지적재산 침해품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 (한국에서 수출할 경우도 포함하여)</u></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p> <p><관련법령 등> 관세법</p>
비 고	<p>① 에 대하여</p> <p>일본의 관세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접권, 회로배치이용권 및 육성자권 등의 주요 지적재산권을 모두 열거하여 이들 권리 침해에 대한 통관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과세법 69 조 11 제 9 항. 참고 : 한국관세법 235 조)</p>

건 명	21.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 통지의 답변 기한 연장 【계속】 장기 검토
현상 / 문제점	<p>한국에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지정 기한은 통상 2개월이다. 그러나, 한국어 문헌을 인용한 사례인 경우 등은 인용한 사례의 번역이 필요한 외국 출원인에게는 이 지정 기간 내의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p> <p>또, 지정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할 때마다 연장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한국 특허청에 지불하는 연장료 및 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대리인 수수료가 소요된다.</p>
개선요망	<p>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지정 기간을 3~4 개월로 한다.</p> <p>한국 특허청이 답변 기간을 장기화하면, 도입이 검토 중인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도’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동일한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다.</p> <p>또한, 지정기간 장기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중에 거절 이유 통지에 답변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연장료를 지불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원인은 1개월마다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한다.</p> <p>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이유 통지의 송달로부터 예를 들어 6개월 이내에 답변 또는 현실적으로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출원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의사가 없는 출원이 대량으로 축적될 염려는 없을 것이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p>일본방식심사편람 04. 10 (재외국민인 경우 3개월, 신청에 따라 3개월 연장가능)</p> <p>미국 3개월 EPC 4개월 중국 4개월 대만 90일간</p>

건 명	22. 멀티 클레임의 용인 【계속】 장기 검토
현상 / 문제점	현재, 다중 인용한 다른 종속항 등을 다중 인용하는 종속항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다면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종속 형식도 인정되어야 한다.
개선요망	멀티의 멀티 클레임 표현을 인정한다. 다중 인용한 다른 종속항의 다중 인용을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범위의 이해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계산되는 각종 비용의 계산이 번잡해지는 점을 한국 특허청은 우려하고 있으나, 같은 클레임 표현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 및 유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특허법
비 고	일본 및 유럽 특허 협력 조약에서는 이와 같은 종속 형식의 클레임 표현을 인정하고 있다.

건 명	23. 특허 분할 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계속】 일부 조치 완료
현상 / 문제점	실효성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출원인은 심사가 종료되고 특허 결정을 받을 때까지 특허 청구 범위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다면적·망라적으로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사관에 의한 최종 판단(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선행 기술 조사가 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출원인 스스로가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특허 결정시의 특허 청구 범위가 충분히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특허 청구 범위가 불충분한 채로 특허 결정·거절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출원을 분할하여 더욱 명확한 특허 청구 범위에서의 권리화를 지향하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다면적·망라적 권리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선요망	특허 결정 후 또는 거절 결정 후의 일정 기간 동안에도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2008년 한국 국회에 제출된 특허법 개정법안 52조 1항2호에 의하면, 거절 결정 후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분할 출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개정이 조기에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특허법
비 고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 개정을 2007년에 실시하였으며, 이 제도 개정은 많은 출원인에게 호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특허법 44조1항)

건 명	24.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신규】
현상 / 문제점	<p>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 2.2.1에 의하면, 기억 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p> <p>그러나, 기억 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p> <p>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해야지만 실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컴퓨터에 설치할 때, 혹은 설치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비로서 특허권이 실시된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기억 매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억시키지 않기 때문에 침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p> <p>② 한편, 개개인 사용자에게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특허권 침해는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행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용자는 침해자가 되지 않는다.</p>
개선요망	<p><u>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한다.</u></p> <p>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명의 모방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의 읽고 쓸 수 있는 기록 매체’ 와 함께 ‘프로그램 자체’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특허법, 심사 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다.</p> <p>또 대만에서도 2008 년 5 월 심사 기준 개정 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영국에서도 2008 년 2 월부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다.</p>

건 명	25. 외국어 출원에 대하여 【계속】 장기 검토
현상 / 문제점	<p>한국특허청에 대한 출원은 한국어로 출원하도록 되어 있다.</p> <p>그러나 ① 파리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1년간의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특허출원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번역문을 작성해야 한다. 더욱이 ②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즉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출원 당시의 명세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출원 후 보완수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p> <p>따라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기재 내용을 근거로 그 오역을 정정할 수 없는 점 등, 발명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p>
개선요망	<p><u>특허출원에 관하여 외국어 출원을 인정한다</u></p> <p>더욱이 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PLT조약 및 SPLT조약에 발맞춘 특허법 개정 시에 고려하겠다는 견해를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들었으나, 본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PLT조약 및 SPLT조약의 발효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또, 외국어 출원을 도입할 경우 심사관의 업무부담 증가를 한국 특허청은 우려하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PCT에 의한 국제출원이 한국의 국내 단계로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어로 출원된 출원 심사에 대해서도 출원인이 출원 후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한 한국어 번역문을 토대로 실시함으로써 크게 부담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p> <p>또한, <u>모든 외국어 출원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실상의 세계공통어인 영어 등 일부 외국어로 한정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외국어를 그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u></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p>일본특허법 36조의 2</p> <p>미국 37CFR1. 52(d)</p> <p>대만특허법 25조</p> <p>태국 특허법에 의거한 성령 제21호12조2항</p> <p>인도네시아 특허법 30조2항</p>

건 명	26.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보정 범위 확대 【계속】 <u>장기 검토</u>
현상 / 문제점	<p>PCT에 의해 국제특허출원을 실시하고 한국에 국내 이행한 경우, 국내 이행시에 제출한 번역문에 기초하여 절차 보정을 행할 수 있는데 (한국 특허법 제 208 조), 번역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국제 출원의 원문 기재에 기초하여 절차 보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p> <p>그러나, 외국 출원인에게 있어서 원문으로 돌아가 절차 보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원문의 의도를 번역문에서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여지가 있다.</p>
개선요망	<p><u>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절차 보정을 국제특허출원 원문에 기초하여 적어도 등록까지는 가능하게 한다</u></p> <p>한국에서도 PCT에 의한 국제 특허출원에 관하여 절차 보정을 국제 특허출원 원문에 기초하여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또, 본 요청사항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는 빈번한 법개정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PLT조약 및 SPLT조약에 발맞춘 특허법 개정 시에 고려하겠다는 견해를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들었다.</p> <p>그러나, PLT조약 및 SPLT조약의 조기 발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한편,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거의 매년 특허법을 개정하고 특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PLT조약 및 SPLT조약 발효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실현되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원문으로 돌아가 보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특허법184조의 12 제 2 항) . 따라서 한국인이 한국어로 국제 출원을 한 것이고 일본에 국내 이행된 특허출원일 경우 한국어 원문으로 돌아가 보정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제도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일본특허법184조의 12 제 2 항) .</p>

건 명	27. 상표 출원의 조기 심사 제도 도입 【계속】 <u>수용 곤란</u>
현상 / 문제점	<p>상품에 따라서는 개발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고, 상품의 수명도 1 년 정도로 짧은 경우가 있으나, 이런 상품은 판매되자마자 곧바로 중국에서 정품을 모방한 모조품이 제조되어 정품과 거의 동시에 수입될 정도로 모방의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산업의 지적재산권(상표)은 개발·상표 출원 후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하게 기능한다.</p> <p>이와 같이 출원에서 심사 완료까지의 기간동안에 제 3 자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 상표 사용 개시에 따라 출원인이 예상 외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 이외에도, 갱신 등록 출원 기간을 엄수하지 못하고 신규 출원을 해야만 하는 등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또 출원인이 출원중인 상표에 대하여 사용을 개시하였으나 제 3 자로부터 권리 침해라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조기 심사가 침해 문제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p> <p>모방 등에 의한 무단 사용의 경우 출처가 혼동스러워 출원인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미치고 있어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p>
개선요망	<p><u>통상 출원 심사보다도 조기에 심사를 실시하는 조기 심사 제도의 도입</u></p> <p>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하에서 통상 출원 심사보다도 조기에 심사를 실시하는 조기 심사 제도의 도입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p>
비 고	<p>일본에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조기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모방·침해 사건이 발생한 출원에 관한 조기 처리의 필요성,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p> <p>조기 심사 제도 적용 신청부터 심사 결과의 1 차 처리(First action)실시까지의 기간은 약 2.2 개월(특허연차보고 2002 년판)이다. 대상은 출원인 자신 또는 라이선시가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 혹은 지정 역무(일부 상품 혹은 역무를 포함)에 사용 중 또는 사용 준비가 상당 정도 진행된 출원이며 권리화에 대한 긴급성을 요하는 출원이다.</p> <p>기타 조기 심사를 실시하는 조건 등에 차이는 있으나,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각국에서도 상표 출원에 대한 조기 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p>

건 명	28. 상표 출원의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에 대해 【계속】 수용 곤란
현상 / 문제점	<p>상표 등록 A 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지정 상품에 대하여 타인이 출원 B 를 출원한 경우, A 가 불사용이므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인정되어 B 의 결정 시에 A 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B 에 대하여 A 를 인용한 거절 이유는 해소되지 않고 B 는 거절되어 버린다.</p> <p>따라서 상기 예에서 제시한 B 의 출원인이 그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상표법 8 조 5 항의 규정에 따라 인용된 A 의 취소가 확정된 후에 다시 출원해야만 한다. 또 한국을 지정한 국제등록 출원인 경우에는 새로운 국내 출원을 해야만 한다.</p>
개선요망	<p><u>결정 시를 기준으로 선후출원에 관한 판단을 실시한다.</u></p> <p>조기권리화(등록)의 관점에서, 또 중복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도 결정시를 기준으로 선후출원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개정을 요청한다.</p> <p>이에 따라 특허청의 방식심사 등에서의 부담 경감도 기대되며, 게다가 권리의 발생은 설정 등록으로부터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중복 등록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출원인으로서도 재출원비용이 절감되는 부차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p> <p>선등록상표라는 유사 여부의 판단 시점을 후출원 결정 시라고 했을 경우, 선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의 심리의 완급이나 심리보류에 의하여 후출원의 심사가 지연되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재출원을 하는 경우라도 불사용취소판결 확정까지 재출원을 기다려야 하며, 실질적인 후출원의 심사 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출원시의 기준 하에서 이루어진 재출원은 어디까지나 신규 출원으로서 출원일이 설정되고, 그 결과 과거 자신의 출원에 의해 후출원이 된 제 3 자의 유사 상표 출원이 새로운 자신의 선출원이 되어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p> <p>또, 출원시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후출원 등록 전에 주지성을 잃어버릴 경우, 법인의 해산 등을 통해 후출원 출원 시에 존재했던 타인의 동일이름·명칭이 등록 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단 시기가 ‘출원 시’ 라면 후출원 등록을 거부해야만 한다. 이는 불필요한 이유로부터 사권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정 시’ 라면 공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상표법</p>
비 고	일본을 비롯해 구미 기타 많은 나라에서 상표등록 출원의 판단시기는 ‘결정 시’ 이다. (일본상표법 4조3항)

건 명	29. 무효심판의 청구인의 적격 제한 철폐 【계속】 장기 검토
현상 / 문제점	<p>현재의 무효심판제도에서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자와 심사관에게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며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특허법 1 3 3 조 1 항)</p> <p>그러나, 신규성 결여·진보성 결여 등의 공익적 이유에 관하여는 언제까지라도 누구든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필요하다.</p>
개선요망	<p>시기적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p> <p>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운용에서도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들었다.</p> <p>따라서 특허법을 그 운용에 맞추어 개정해도 무효심판 청구 건수가 급증하여 특허권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리라 예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판이나 심결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 적격이 쟁점이 될 소지가 없어지므로 법 개정에 의한 분쟁의 조기 해결도 기대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p>일본,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도 특허 등록 후에 제 3 자가 특허의 무효를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 청구인의 적격을 이해관계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특허법 1 2 3 조)</p>

건 명	30.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계속】 수용 곤란
현상 / 문제점	<p>특허권 침해소송에서는 피고가 대항수단으로서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대상 특허의 유효성(신규성·진보성 등)을 별도로 특허심판원, 더 나아가 특허법원에서 분쟁하는 경우가 많다.</p> <p>현시점에서도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대상 특허발명이 명확히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등은 법원이 특허무효 항변 및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운용은 제도 이용자로서는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환영할만한 것이나, 제도상 이와 같은 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p>
개선요망	<p><u>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제도의 도입</u></p> <p>특허 등에 관한 소송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영국 등과 같이 특허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 의하여 특허무효(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것)의 항변을 인정하고, 법원이 특허의 유효/무효와 침해의 유무를 동시에 판단해주기 바란다.</p> <p>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이것을 일보 진진시켜, 예를 들면 특허법 중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해당 특허가 특허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고, 법원이 침해 소송에서 대상권리의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일본특허법 104조의 3

건 명	31. 침해 입증의 용이화 【계속】 장기 검토
현상 / 문제점	<p>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소송 제기 이전에는 증거 수집의 처분 절차가 없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소송 당초부터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나, 소송 제기 전에 소송 상대 예정자로부터 정보나 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p> <p>또, 소송 상대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방법’ 이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 소송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된 영업 비밀의 보호가 문제시되는 경우도 많다.</p>
개선요망	<p>기소 전, 및 소송 심리 중의 증거 수집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p> <p><u>①기소 이전의 수집 방법에 대하여</u></p> <p>기소 이전의 증거 보전 이외에, 예를 들면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원 관계자가 ‘가’ 호 등을 조사하여 ‘가’ 호 특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보(예를 들면, 특허클레임에 해석 없이 문언 상 포함될 수 있는 ‘가’ 호가 존재하는 등)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신설해 주기 바란다.</p> <p><u>②소송 심리중의 증거 수집에 대하여</u></p> <p>침해 입증, 손해액 입증을 위해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와 같은 문서(영어 비밀을 포함)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법원이 당사자에게 명령하는 등의 제도를 바란다. 또, 문서가 영업 비밀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히 허락된 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절차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p> <p>또,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재판에서는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면 법원만이 그 증거를 보는 식으로 일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용을 인카메라 절차로서 법률상에 명기해 주시기를 바란다.</p> <p>또, 이 소송 심리 중의 증거 수집에 관한 요청에 대해서는 2007 년에 한국 국회에 제출된 특허법 개정법안 132 조, 224 조의 3~5 가 성립됨으로써 대부분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개정이 조기에 실시되기를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일본특허법 105조, 일본민사소송법 132조의 4

5. 개별 요망사항

건 명	32. 신약 승인·약가 수재 심사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신규】
현상 / 문제점	<p><현상></p> <p>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2006년 이후 적자상태이며, 그 재정 재건책으로서 2007년 1월에 도입된 의료경제학(HTA)과 파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제도의 실시 등을 포함한 ‘약재비 합리화 계획’에 따른 다양한 약재비 억제책이 실시되고 있다. HTA와 파지티브 리스트에 기초한 상환리스트 수재 상황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 사이에 신청된 84건 중,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제 경제학 평가에서 47건이 수재되고, 나머지 37건은 수재가 연기되었다. 더욱이 47건 가운데 NHIC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건강보험공단)와의 약가교섭이 타결되고 약가가 수재된 것은 10건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억제책이 단행되어 신약이 환자들에게 도달할 때까지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하여 큰 폭으로 지체되는 ‘리스트 러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약가 수재를 위하여 1년 가까이 HIRA 및 NHIC와 교섭해서는 신약이 환자의 손에 도달하는 것은 다른 유럽, 미국, 일본 선진각국과 비교하여 대폭 지체되 버린다. 약사(藥事)(유효성·안전성·품질관리)심사와 약가(경제성)심사의 차이가 지나치게 심하고, 규제와 투자가 불균형한 상태이다.</p> <p><문제점></p> <p>정부의 약사 담당 기관인 KFDA(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미승인약의 국제 공동 치험을 추진하는 등,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앞서는 면도 많다. 그러나 신약 승인 후의 보험약가 수재심사 과정에서는 HIRA에 의한 의료 경제성 평가 및 보험 상환 대상약 리스트 수재 여부 평가, 및 그 후에 이어지는 NHIC의 신청 업체와의 약가교섭이 있어 기존 체제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과 교섭력을 요한다. 게다가, 인정되는 약가는 기존의 오리지널 경합품 수준이 아니라 그 제네릭을 밀도는 가격수준으로 재정되어 신약개발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신약 투입 의욕을 크게 저해시키는 약사 규제 행정이다.</p>
개선요망	<p>약가 수재 심사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정당한 약가 산정 체제의 구축을 절실히 바란다. 약가담당국인 HIRA 및 NHIC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견지(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약사와 약가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신약이 빨리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보건복지가족부</p> <p><관련법령 등>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조정」 (보건복지부 공시)</p>

건 명	33. 국가 산업단지내에서의 신규사업(폐기열을 이용한 농업사업) 추가 【신규】
현상 / 문제점	국가 산업단지 내에서의 사업리스트에 농업사업(농수산물 제조판매 및 그에 관한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선요망	국가 산업단지 내 사업리스트에 상기 사업을 추가할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동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국가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본래의 사업에서 발생한 폐기열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더욱 더 세수증가가 기대된다.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관련법령 등>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비 고	농림수산식품부를 관할하는 농업센터도 현재 같은 지역에서 폐열 이용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건 명	34.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샘플의 수입절차 확인방법의 개선 【계속/내용변경】 <u>수용 곤란</u>
현상 / 문제점	<p>화학물질 수입 전에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한 ‘화학물질확인내역서’와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 확인 신청서’에 대하여 ①소량(연간100kg미만)의 연구개발용 샘플에 대해서는 <u>신고 절차는 불필요하다</u>, 혹은 ② ‘수입자는 <u>통관 3 일전까지</u>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청하고, 화학물질관리협회는 통관 전에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의 기한 완화를 과거 2회 요청했다. 그러나, 신규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기초 정보의 확인, 국민 건강 및 환경 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p> <p>한국 정부측의 의도도 이해할 수 있는 바, 정보 수집, 서류 작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매일 100건 이상의 신청을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다.</p> <p>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수입자는 웹상에서 개별 확인신청서의 미완/완료 여부의 열람이 가능하나, 확인 번호 별로 수입량 및 해당 화학물질의 연간누적 수입량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협회가 집계한 수입량과 수입자가 파악하고 있는 수입량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p> <p>또 통관 물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면제 신청이 끝났는지를 일람표 형식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누락, 신청 지연, 수입량 파악 차이의 유무를 발견할 수 없다.</p>
개선요망	<p><u>현행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작업의 신속화, 내용의 재확인을 위하여 수입자는 자사 수입분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란다.</u></p> <p>① 관세청이 기록한 수입면장 품목별 통관 실적 일람과 화학물질관리협회가 기록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면제 확인 신청서 일람을 각각 공개하기 바란다.</p> <p>② 신청 확인 번호별 수입량, 및 해당 화학물질의 연간 누적 수입량</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관세청</p> <p><관련법령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p>
비 고	

6. 생활환경 개선 분야

건 명	35. 생활환경 개선(교통문제 제외) 【계속】 <u>수용 가능</u>
項 目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인등록증 기재 (영주권) ② 공공미화에 대하여 ③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편의성 제고 ④ 한국 관청 웹사이트의 편의성 제고 ⑤ 출입국 심사에 대하여
현상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F 5 (영주권) 비자는 기한이 없으므로 취득일시만을 기재. 따라서 은행 창구 등의 담당자가 그 기재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발생한다. ② 쓰레기 문제, 공중화장실 문제 등, 공중도덕 등 공공 미화(쓰레기 투기,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할 것, 공중화장실의 유지)에 대한 매너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화장실의 정비(장애인용 화장실이 매우 적음)가 매우 불충분하다. ③ 휴대전화를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없고, 인터넷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한국 관청의 웹사이트에서는 로컬 사양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예:아래한글)가 사용되고 있어 매우 불편하다. ⑤ 심사관, 출입국지의 차이(김포공항, 인천공항) 등에 의해 처우가 크게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D-8비자 소유자가 한국인 부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에 큰 차이가 있다.
개선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F 5가 영주, 날짜가 취득일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 변경을 바란다.</u> ② <u>공공 미화에 대해서는 벌칙의 강화 및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널리 알리기에 힘쓴다. 더욱이 공공화장실의 정비(장애인용 화장실, 영유아 기저기 교환대 설치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u> ③ <u>외국인 등록번호 보유자의 편의성 제고를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u>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구입 가능, 웹 상의 외국인등록번호 확인 등) ④ 한국의 글로벌화 등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울리는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u>기본적으로 창구에 따라, 심사관에 따라 대응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기 바란다.</u>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외교통상부 등</p> <p><관련법령 등></p>
비 고	

건 명	36. 교통문제 전반에 관한 개선 【계속】수용 가능
項 目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 교통기관 등에서의 매너 ② 교통 규칙의 준수 ③ 버스정류장의 영어 표기 ④ 택시 승차에 대하여 ⑤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⑥ 지하철 마지막 열차의 운행시간 ⑦ 도로 정체 문제 ⑧ 썬팅에 대한 대응
현상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하철 열차 내에서 물건을 판매한다. ② 주차 위반 / 신호 무시 / 무모한 차선 변경 등, 교통 규칙 준수 자세가 결여되어있으며 동시에 경찰의 단속이 매우 느슨하다. 특히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가 보도를 주행하는 경우가 눈에 자주 띈다. ③ 버스 정류장의 영어 표기가 아직 적다. ④ 택시의 합승, 승차 거부가 아직 눈에 띈다. ⑤ 보행자용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유모차 등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⑥ 지하철 마지막 열차가 평일에 비해 주말에는 1 시간 이르다. 예를 들면 KTX 의 마지막 열차의 서울 도착 시간 '0 시 22 분 도착' 인데 여기에 맞추어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고 있다. ⑦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버스 전용도로의 확대 등 버스 이용의 장점만을 고려한 시책이 선행되고, 정체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⑧ 썬팅이 짙어 운전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보행자는 공포감을 느낀다.

<p>개선요망</p>	<p>/② <u>기본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교통 규칙 무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u> 특히 외국인,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에게는 운전자의 매너 등으로부터 생기는 불안, 불편은 헤아릴 수 없으며, 조속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p> <p>/ 영어 표기 문제, 택시 승차 문제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의 큰 판단 재료가 되므로, 이와 같은 점에 <u>대해서도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본 대응을 바란다.</u></p> <p>⑤ 이 점은 외국인 뿐 아니라 한국인도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가능한 한 신속한 대응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⑥ <u>지하철 운행에 대해서는 마지막 열차 시간을 늦추는(특히 주말)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배려해 주기 바란다.</u></p> <p>⑦ <u>정체 해소는 하루 아침에 진전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균형 잡힌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u></p> <p>⑧ <u>썬팅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규제를 일본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측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40%→70% 이상으로 올려 주기 바란다.</u></p>
<p>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국토해양부 등 <관련법령 등> ⑧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p>

건 명	37.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계속】 <u>수용 가능</u>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한 안건>
현상 / 문제점	출산 자녀를 외국인 등록 할 때, 출산 후 1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는 규칙이 있다. 등록 시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여권 및 호적 초본이 있는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일본국의 호적 초본이 필요하며, 일본대사관의 웹사이트에도 출생신고 제출로부터 호적 게재까지는 통상적으로 1.5 개월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1 개월 이내에 호적 초본 및 여권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벌금 징수뿐 아니라 서울 시내의 출입국 관리국 출장소에서 신청을 할 수 없어 대단히 불편하다.
개선요망	<u>신생아의 외국인 등록 신청 기간을 90 일정도까지 연장해 주기 바란다.</u> 또, 지난 번 (2007년) 건의에 대한 답신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체류 자격 부여 기간을 90 일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법무부 <관련법령 등> 출입국 관리법
비 고	